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67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호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6. 1. 4.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4. 접수 제3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5. 12. 3.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10291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5. 7. 6.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2005. 12. 31.자로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2010년경부터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사업을 하고 고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안산세무서장은 2010. 2기부터 2014. 1기까지 총 8기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6. 5. 31.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196,471,240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소득세 56,046,57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76,122,3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한편, B는 2015. 12. 3.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2016. 1. 4.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주문 제1,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체납당시인 2016. 7. 31.경 또는 피고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한인 2016. 10. 31.경 피고가 제출한 가족관계공부 및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한 직권 탐지를 통하여 B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및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확인가능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에 의하면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 재산현황조서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에 관하여 별도로 재산현황조사서 등은 작성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2. 4. ‘고액 체납자 증여자료 기획 분석’ 자료가 작성되기 전까지 원고가 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의 체납당시인 2016. 7. 31.경 또는 피고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한인 2016. 10. 31. 무렵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때 알지 못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현황조사서의 작성만으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도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B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4년경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B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6. 5. 2. 실제로 원고가 B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하고, 2016. 5. 16. 및 2016. 7. 1.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세고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액이 약 1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를 초과하는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액이 존재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는 'D'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향후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인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실질적인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목 록

1. [토지] 안산시 단원구 E, 도로 144㎡ 중 B 소유 공유자 지분 144분의 17
2. [토지] 안산시 단원구 F, 도로 108 중 B 소유 공유자지분 108분의 26
3. [토지] 안산시 단원구 G, 임야841㎡
4. [집합건물] 경기도 시흥시H아파트 I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철근콘크리트조 84.910㎡

(대지권의 표시)대지권 45555.4㎡ 중 45555.4분의83.378

중 B 소유 공유자 지분 2분의 1 끝.

